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윤영희 의원(찬성자:25명)

나. 의안번호 : 제 2195 호

다. 발의일자 : 2024. 10. 7.

라. 회부일자 : 2024. 10. 18.

2. 제안이유

- 현재 서울 관내 반려동물이 출입할 수 없는 하천은 청계천이 유일함.
- 서울시는 반려동물 친화 정책 일환으로 지난 30일부터 청계천 일부 구간에 반려동물 출입 허용 시범사업을 시행 중임.
- 반려동물 양육 가구를 고려한 정책 확대 기조에 따라 청계천에 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출입 동물의 배설물 처리 등 이용 수칙을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안 제11조제1항제8호 동물동반 출입행위 삭제
- 나. 안 제11조제3항 이용행위 예외사항 규정
- 다. 안 제12조 금지행위에 대한 내용 신설
- 라. 안 제13조 금지행위의 단속에 대한 내용 신설
- 마. 안 제14조 과태료 부과에 대한 내용 신설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하천법」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 다. 기 타 :
 - 1) 입법예고(2024. 10. 23.~10. 27.) 결과 : 의견 1건
(〔붙임 1〕 참조)

5. 검토의견

■ 개요

- 본 개정안은 반려동물 양육 가구를 위한 정책 확대 기조에 따라 청계천에 반려동물의 동반 출입을 허용하면서 그에 따른 공공질서 유지 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코자 하는 것임.

[표] 개정안 주요골자(안 제9조·제11조·제14조·제14조의2, 안 별표2)

현 행	개 정 안
<p>제9조(사용료 징수 및 면제 등) ① 시장은 사용자에게 대하여 <u>별표</u>의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p> <p>1.· 2. (생 략)</p> <p>② ~ ④ (생 략)</p>	<p>제9조(사용료 징수 및 면제 등) ① ----- ----- <u>별표 1</u>----- ----- -----</p> <p>1.· 2. (현행과 같음)</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제11조(행정지도) ① 시장은 시민의 안전 및 공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p> <p>1. ~ 6. (생 략)</p> <p>7. 자전거, 인라인스케이트 등 바퀴가 있는 동력 또는 무동력 장치의 <u>이용행위</u> (다만, 장애인·유아·노약자 등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장치이거나 청소·공사·보수 등 청계천 시설관리를 위하여 출입하는 행위는 제외한다.)</p> <p>8. <u>동물동반 출입행위</u>(다만, 장애인을 보조하는 장애인 보조견<補助犬>은 예외</p>	<p>제11조(행정지도) ① ----- ----- -----</p> <p>1. ~ 6. (현행과 같음)</p> <p>7. ----- ----- <u>이용행위</u></p> <p><삭 제></p>

로 한다)

② (생략)

<신설>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제7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동력 또는 무동력 장치 이용이 가능하다.

1. 장애인·유아·노약자 등 교통약자
2. 청소·공사·보수 등 청계천 시설관리

<신설>

제12조(금지행위) ① 누구든지 청계천 구역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동반한 반려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는 행위
2. 동반한 반려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아니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는 행위
3. 동물보호법에 따른 맹견 출입을 출입시키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의 금지행위가 적용되는 청계천 출입구 등에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제13조(금지행위의 단속) ① 시장은 제12조 금지행위 단속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단속업무를 수행하며, 단속반은 담당공무원 및 서울시설공단 직원으로 편성·운영 할 수 있다.

② 금지행위를 단속하는 공무원은 단속 전에 별도로 정하는 표식을 내보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그 공무원이 제12조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 및 사진 등의 증거자료와 위반장소, 위반행위 등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위반자의 도주나 불응 등으로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류에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제14조(과태료의 부과) ① 제12조의 금지행

	<p>위를 위반한 과태료의 금액기준은 별표 2와 같다.</p> <p>② 과태료의 부과징수와 이의신청 등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p>																							
<신 설>	제14조의2(세부사항) 동물동반 출입 행위와 관련된 사항은 서울특별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 설>	<p>[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제14조 관련)</p> <p>(단위 : 천원)</p>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근거조항</th> <th rowspan="2">금지행위</th> <th colspan="3">과태료금액</th> </tr> <tr> <th>1차</th> <th>2차</th> <th>3차</th> </tr> </thead> <tbody> <tr> <td>제12조제1항제1호</td> <td>동반한 애완동물의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시설물 위의 것에 한한다)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td> <td>50</td> <td>70</td> <td>100</td> </tr> <tr> <td>제12조제1항제2호</td> <td>동반한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는 행위</td> <td>200</td> <td>300</td> <td>500</td> </tr> <tr> <td>제12조제1항제3호</td> <td>멍견을 출입시키는 행위</td> <td>1,000</td> <td>2,000</td> <td>3,000</td> </tr> </tbody> </table>	근거조항	금지행위	과태료금액			1차	2차	3차	제12조제1항제1호	동반한 애완동물의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시설물 위의 것에 한한다)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50	70	100	제12조제1항제2호	동반한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는 행위	200	300	500	제12조제1항제3호	멍견을 출입시키는 행위	1,000	2,000	3,000
근거조항	금지행위			과태료금액																				
		1차	2차	3차																				
제12조제1항제1호	동반한 애완동물의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시설물 위의 것에 한한다)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50	70	100																				
제12조제1항제2호	동반한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는 행위	200	300	500																				
제12조제1항제3호	멍견을 출입시키는 행위	1,000	2,000	3,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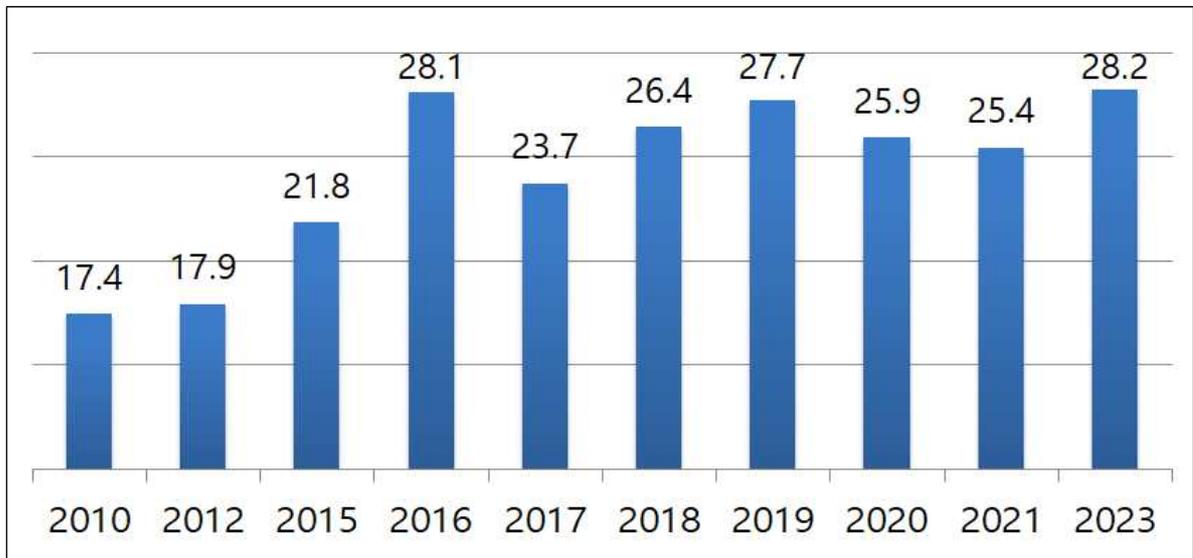
■ 서울시의 청계천 반려동물 출입 정책 추진 현황

- 청계천은 서울시 관내 하천 중 유일하게 반려동물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데, 이는 청계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과 공익을 보호하고 복원된 하천의 생태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로 본 조례 제정 당시(2005년) 제11조제1항제8호에 ‘동물동반 출입행위’를 행정지도 사항으로 규정함에 따른 것임.
- 이 같은 규정은 청계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과 공익을 보호하고 복원된 하천의 생태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설정되었으며 현

재까지 청계천 전 구간에서 반려동물의 출입을 금지하는 근거가 되어 왔음.

- 그러나 최근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증가('10년 17.4%→'23년 28.2%)([표] 참조)와 반려동물 친화 정책 기조의 확산¹⁾에 따라 청계천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요구(행안부 청원²⁴ 청계천 반려동물 출입 관련 찬반청원)²⁾와 여론³⁾등이 있어,

[표] '10년~'23년 국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 비율



※ 2023년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보고서_농림축산식품부(2023.12.07.)

- 서울시는 2024년 9월부터 12월까지 약 3개월간 청계천 일부 구간에서 반려동물의 출입을 허용하는 시범사업([표] 참조)을 추

1) '명양가족 모여라! 서울시, 전국 최초 동물보호의 날 제정 기념 축제' 서울시__보도자료 (2024.09.05.)
- 서울시, 뚝섬한강공원에서 '동물가족 행복 페스타' 10월 5~6일, 2일간 개최
'산책즐기는 댕댕이 건강 위해! 서울시, 광견병 예방 백신 지원' 서울시__보도자료(2024.10.16.)
- 서울시, 반려동물 광견병 예방백신 4만5천개 무상지원, 보호자는 1만원 접종료만 지불 등 외 다수

2) 행정안전부 청원²⁴-'청계천 반려동물 출입 관련 찬·반 청원'
- '24.4.30~9.10 (총 3회) 반려견 출입 찬성 31, 반대 56

3) '서울 유일의 '반려견 금지구역'청계천, 이번엔 열리나' 서울신문(2024.05.28.) 외 다수

진하고 있으며,

- 시범사업 구간은 상대적으로 이용 밀도가 낮아 관리와 효과 측정이 용이한 동대문구 황학교 하류에서 성동구 중랑천 합류부까지 약 4.1km(〔그림〕 참조)로 설정하였고, 이 구간에서 반려동물 동반 출입에 따른 현황조사, 모니터링 결과 분석, 설문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음.

[표] 청계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시범사업 현황

□ 사업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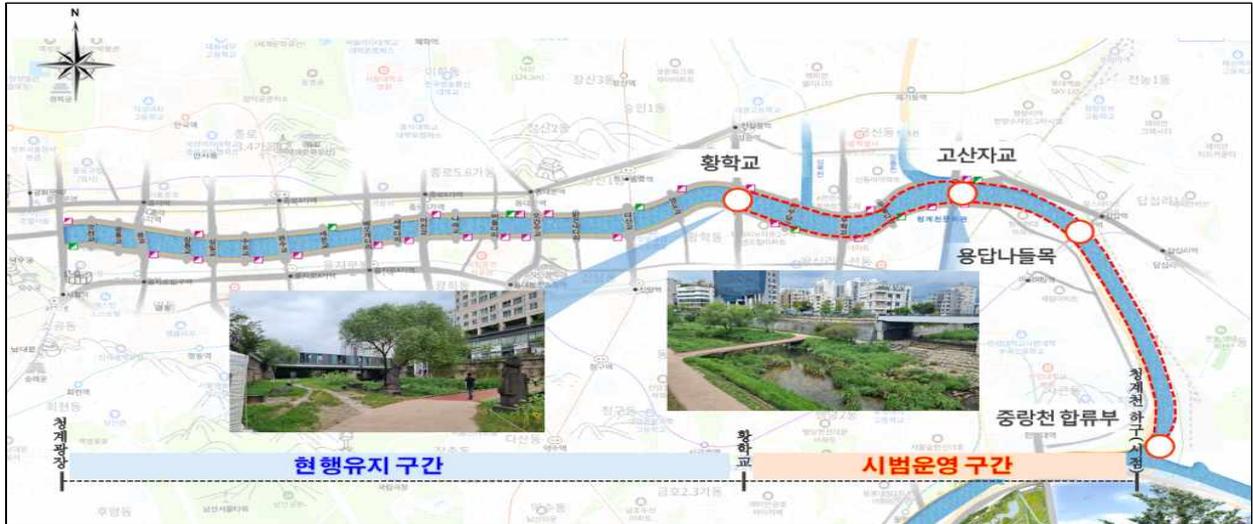
- 시범구간 : 황학교 하류 ~ 중랑천 합류부 4.1km
 - 시점부~황학교 구간은 산책로가 협소(3m 이내) 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구간으로 안전 사고 및 이용불편 우려
 - 황학교 하류는 산책로 주변 여유공간이 있으며, 재개발 주거지역 및 성북천·정릉천과 연계하여 반려견 출입이 용이
- 운영기간 : '24. 9. 30. ~ 12. 30.(3개월)
- 출입조건 (사전홍보, 현장지도)
 - 반려견 목줄 길이 1.5m 준수
 - 반려인(반려견 소유자)이 배변봉투 지참 및 분변 직접 수거토록 안내
 - 맹견 등 사나운 견 입마개 착용, 발생시 견주의 책임을 홍보
- 추진계획
 - 청계천 반려동물 동반 출입 현황 카운팅 및 모니터링
 - 설문조사를 통한 불편여부 조사

< 모니터링 및 설문조사 >

▷ 온·오프라인 조사 실시

구 분	조사자 (조사주기)	방 법	조사내용
오프라인 모니터링	자원봉사자 20명 (주 3회)	현장에서 체크리스트 작성	출입수, 출입방법, 펫티켓 준수여부 등 육안 확인사항
온라인 설문조사	청계천이용 주민 (상 시)	휴대폰으로 현수막, 출입구 안내판에 QR코드 인식	반려인,비반려인대상 시범사업에 따른 개선사항,불편사항 등

▷ 모니터링 실시 계획 : 황학교, 정릉천 합류부 각 1인, 격주 운영



[그림] 청계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시범사업 구간

■ 주요골자별 의견

가. 행정지도 항목 중 동물동반 출입행위 삭제 (안 제11조)

- 안 제11조제1항제8호는 시장의 행정지도 사항인 ‘동물동반 출입행위’를 삭제하려는 것으로 최근 반려동물 친화 사회로의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청계천에 동물동반 출입이 가능토록 하려는 취지라 하겠음.
- 본 개정안과 관련하여 의회 입법예고 기간 중 청계천 내 반려견 동반 출입을 찬성하는 시민 의견 1건(붙임 1) 참조)이 접수되었으며,
- 서울시가 현재 진행 중인 “청계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시범사업 (’24.9.30.~12.30.)”의 11.20일 기준 설문조사 중간결과를 살펴보면, 전 구간 확대 허용 63건, 시범사업 구간(황학교 하류~중랑천 합류부, 4.1km) 유지 12건, 전 구간 금지 47건 등(표) 참조)으로 나타났음.

- 이처럼 11.20일까지의 중간결과는 동물동반 출입의 완전한 허용이 63건이고 대비 시범 구간만 허용(청계천 시점~황학교 구간은 금지)이 12건 그리고, 현행처럼 전 구간 금지가 47건으로 전 구간 금지나 일부 구간 부분 개방보다는 완전한 허용이 다소 우위에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다만, 진행 중인 설문응답 이외에도 물순환안전국(치수안전과)과 관리대행기관인 서울시설공단 등에 동물동반 출입과 관련한 불만 민원이 다수 접수되고 있는바, 12.30일 최종 완료될 시민 설문조사 결과 및 관련 데이터가 확보되어야만 보다 정확한 시민 의견이 파악될 것으로 사료됨.

[표] 청계천 동물출입 시범 사업 시민의견 수렴 현황 ('24.11.20.기준)

- 청계천 반려동물 동반 출입 현황 및 모니터링 결과
 - 청계천 반려견 출입 인원은 일평균 77.6명으로(평일 72명, 휴일 93명)으로 집계 되었으며, 현장 모니터링 결과 목줄 착용 등 팻티켓을 잘 준수하고 있음.
- 설문조사를 통한 불편여부 조사 결과, “통행불편”이 주요 사항임
 - 불편사항 조사 : 총60건
 - 통행불편(28건), 배변오염(20건), 소음기타(1건), 불편 없음(11건)
- 구간확대 의견
 - 전구간 허용(63건), 시범구간 유지(12건), 전구간 금지(47건)
- 시범사업('24.9.30.~) 후 민원사항
 - [치수안전과 처리 민원] 출입허용 불만민원 11건(응답소7, 전화4)
 - [서울시설공단 처리 민원] 2024년 청계천 청소, 보수요구 등 민원 373건 중 동물동반 민원 23건으로 전체민원의 6%

- 다음으로, 안 제11조제3항은 현행 조례 제11조제1항제7호 단서에서 규정된 내용을 독립된 조항으로 분리하여 조례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음.

나. 청계천 내 금지행위와 이를 위한 단속 및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안 제12조~제14조)

- 안 제12조부터 안 제14조까지의 신설은 반려동물 동반자의 금지행위를 안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이에 대한 단속 절차를 안 제13조에 명시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안 제14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이는 본 개정안의 취지대로 청계천에 동물동반 출입을 허용하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측에서 반대의 사유로 제기하는 사항들을 금지행위로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안 제14조에 의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기준 등을 마련함으로써 동물동반 출입에 대한 반대사유를 해소코자 하는 조치로 이해됨.
- 이에 해당 안들을 살펴보면, 우선 안 제12조는 청계천 내 반려동물 출입과 관련하여 청계천의 질서를 유지하고자 “동반한 반려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는 행위”와 “동반한 반려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아니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는 행위” 그리고 “「동물보호법」에 따른 맹견 출입을 출입시키는 행위”를 청계천 내의 금지행위로 규정하면서 이를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13조는 안 제12조에서 규정한 금지행위의 단속을 위해 단속반을 편성(담당 공무원 및 서울시설공단 직원)하고 단속 과정은 포식을 제시해야 하며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증거자료와 관련 서류

를 갖추도록 하는 절차 등을 명시하고 있음.

- 그리고 안 제14조는 안 제12조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금액 기준을 배설물 미수거, 목줄 미착용, 맹견 출입 등 금지행위 유형별로 [별표 2]([표] 참조)를 통해 정하면서, 부과·징수 등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⁴⁾을 따르도록 금지행위에 대한 벌칙을 정하고 있음.

[표] 개정안 [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제14조 관련)

(단위 : 천원)

근거조항	금지행위	과태료금액		
		1차	2차	3차
제12조제1항제1호	동반한 애완동물의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시설물 위의 것에 한한다)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50	70	100
제12조제1항제2호	동반한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는 행위	200	300	500
제12조제1항제3호	맹견을 출입시키는 행위	1,000	2,000	3,000

- 이에 대해 관련 상위법 측면에서 살펴보면, 안 제12조의 금지행위는 현행 「동물보호법」 제16조⁵⁾ 및 제22조⁶⁾에서 이미 반려

4)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장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 제20조(이의제기)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때의 대상, 금액, 납부방법, 감경, 제척기간, 이의제기 등 과태료 부과 및 집행 절차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음.

5) 「동물보호법」 제16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① 등록대상동물(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의 개)의 소유자등은 소유자등이 없이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목줄 착용 등 사람 또는 동물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할 것
2. 등록대상동물의 이름, 소유자의 연락처,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한 인식표를 등록대상동물에게 부착할 것
3.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할 것

동물의 목줄착용 등 안전조치를 할 것과 배설물이 생겼을 때 즉시 수거할 것 그리고 맹견의 출입 금지 장소와 관련된 준수사항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14조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과태료의 부과 또한, 「동물보호법 시행령」 [별표 4]의 과태료 부과기준⁷⁾에서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는 경우”,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맹견을 출입하게 한 경우”로 구분하여 본 개정안과 동일한 과태료 금액을 이미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상위법령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음에도 본 개정안이 동일

③ 시·도지사는 등록대상동물의 유실·유기 또는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등으로 하여금 등록대상동물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하게 하거나 특정 지역 또는 장소에서의 사육 또는 출입을 제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6) 「동물보호법」 제22조(맹견의 출입금지 등)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맹견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7. (생략)

8.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제7조의3(맹견의 출입금지 등)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맹견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 7의2. (생략)

8.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맹견으로부터 피해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장이 지정·고시하는 장소

7)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35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법 제10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5조 관련)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차. 소유자등이 법 제16조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 제4항제6호	5	7	10
아. 소유자등이 법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 제4항제4호	20	30	50
너. 소유자등이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맹견을 출입하게 한 경우	법 제101조 제2항제4호	100	200	300

한 골자의 내용으로 중복하여 명시하고자 하는 것은 입법적 필요성과 체계성 측면에서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됨.

- 이러한 법체계 상황을 고려할 때 안 제12조에서 금지행위를 중복하여 신설하기 보다는 현행 제11조제1항의 행정지도 항목에 이를 추가함으로써 「동물보호법」 제16조제2항 및 제22조제8호⁸⁾에 따른 동물동반 출입자의 준수사항을 명확히 하고 이를 청계천 관리자(서울시설공단)가 일차적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하면서,
- 지도에 따르지 않을 경우 「동물보호법」 제101조⁹⁾에 의거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별도의 항(〔표〕의 수정의견안 제11조제4항)을 신설하는 방안이 보다 합리적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짐.

8) 「동물보호법」 제16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① (생략)

②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목줄 착용 등 사람 또는 동물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할 것
2. 등록대상동물의 이름, 소유자의 연락처,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한 인식표를 등록대상동물에게 부착할 것
3.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할 것

제22조(맹견의 출입금지 등)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맹견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 7. (생략)
8.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

9) 「동물보호법」 제10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9. (생략)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22조를 위반하여 맹견을 출입하게 한 소유자등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26. (생략)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 제16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인식표를 부착하지 아니한 소유자등
6. 제16조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한 소유자등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 한편, 안 제13조는 안 제12조의 금지행위 단속 권한을 담당 공무원과 서울시설공단 직원에게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¹⁰⁾에서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에 한하여 위탁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살펴볼 때 대행기관인 서울시설공단 직원에게 직접적인 단속권한을 부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바,
- 서울시설공단은 지도행위를 담당하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통보하여 적의 조치토록 하는 방안이 합리적일 것이며, 따라서 안 제13조는 삭제할 필요가 있어 보임.

[표] 개정안에 대한 수정의견(안 제11조 및 안 제12조)

개 정 안	수정의견(안)
제11조(행정지도) ① (생략) 1. ~ 7. (생략)	제11조(행정지도) ① (개정안과 같음) 1. ~ 7. (개정안과 같음) 8. 동반한 반려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는 행위 9. 동반한 반려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아니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는 행위 10. 「동물보호법」에 따른 맹견을 출입시키는 행위
<신 설>	
<신 설>	
<신 설>	
② ~ ③ (생략)	② ~ ③ (개정안과 같음) ④ 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에 대한 지도행위를 함에 있어 「동물보호법」 제16조 및 제22조에 위반되는 경우 같은 법 제101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신 설>	
제12조(금지행위) ① 누구든지 청계천 구역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동반한 반려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는 행위	<삭 제>

10)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 ② (생략)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2. 동반한 반려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아니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는 행위

3. 동물보호법에 따른 맹견 출입을 출입시키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의 금지행위가 적용되는 청계천 출입구 등에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3조(금지행위의 단속) ① 시장은 제12조 금지행위 단속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단속업무를 수행하며, 단속반은 담당공무원 및 서울시설공단 직원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② 금지행위를 단속하는 공무원은 단속 전에 별도로 정하는 표식을 내보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그 공무원이 제12조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 및 사진 등의 증거자료와 위반장소, 위반행위 등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위반자의 도주나 불응 등으로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류에 기재하여야 한다.

<삭 제>

제14조(과태료의 부과) ① 제12조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과태료의 금액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과태료의 부과징수와 이의신청 등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삭 제>

[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제14조 관련)

(단위 : 천원)

<삭 제>

근거조항	금지행위	과태료금액		
		1차	2차	3차
제12조제1항제1호	동반한 애완동물의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시설물 위의 것에 한한다)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50	70	100
제12조제1항제2호	동반한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는 행위	200	300	500
제12조제1항제3호	맹견을 출입시키는 행위	1,000	2,000	3,000

다. 시장의 별도 권한 신설 (안 제14조의2)

- 안 제14조의2는 청계천 내 “동물동반 출입 행위와 관련된 세부 사항은 서울특별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동물동반 출입과 관련하여 전면 개방 또는 일부 개방 등 현장 여건 및 시민 요구사항 등을 반영하여 유연하면서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따라서 취지에 맞게 조문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바, 안 제14조의2를 현행 조례 체계에 맞게 안 제12조로 옮겨 “시장은 필요에 따라 일정구간 등을 정하여 동물동반 출입행위를 제한할 수 있고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로 수정하는 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표] 개정안에 대한 수정의견(안 제12조 ~ 제14조의2)

개 정 안	수정의견(안)
제12조(금지행위) ① ~ ② (생략)	제12조(동물동반 출입행위에 대한 제한) 시장은 필요에 따라 일정구간 등을 정하여 동물동반 출입행위를 제한할 수 있고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3조(금지행위의 단속) ① ~ ③ (생략)	<삭 제>
제14조(과태료의 부과) ① ~ ② (생략)	<삭 제>
제14조의2(세부사항) <u>동물동반 출입 행위와 관련된 사항은 서울특별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u>	<삭 제>

[붙임] 1.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의견

2. 청계천 반려견 동반출입 관련 시민 설문조사 문항

[붙임 1]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의견

찬성 - 모든! 시민을 위한 청계천이 되어주세요.

*작성자 : 정초롱 *등록일 : 2024-10-24

*첨부파일 :

반려견을 키우는 서울시민입니다.

몇해전 반려견과 청계천을 찾았다가 반려견출입불가라는 표지판을 보고 발걸음을 돌린 적 있습니다. 시에서 다수가 즐길 수 있게 조성한 공공장소, 게다가 야외임에도 반려동물의 출입이 제한되어 있다는게 의아했습니다. 아쉬웠지만 그 날의 기억은 그렇게 잊고 살았습니다.

최근에 청계천 일부구간에서 반려견 산책이 가능하다는 소식을 접하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일부러 찾아가진 않았지만 언제든 갈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설레는 마음입니다. 서울의 명소 청계천에 강아지와 방문 할 수 있다니!!

서울시에 등록된 반려견이 61만마리,
서울시에서 10가구당 1가구가 반려견과 함께 살고 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시민의 소중한 휴식의 장소인 청계천이 '모든' 시민을 위한 장소가 되길 바랍니다.

청계천 전 구역에 반려견 동반 법안을 적극 찬성합니다.

[붙임 2] 청계천 반려견 동반출입 관련 시민 설문조사 문항
 (https://form.naver.com/response/gctVXy8yy8bwSVsP_oAYjg)

1. 반려견 동반출입

N 품

1/6

청계천 반려견 출입 시범사업 시민 설문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설공단 청계천관리처입니다.

청계천 반려견 동반 출입 시범사업관련하여 시민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설문의 참여하신 분들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소정의 경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시민여러분들의 애정 어린 말씀 부탁드립니다. 청계천이 시민여러분의 쉼터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09.06. 오후 03:45 ~
 2024.12.31. 오후 08:00

* 답변 필수

* 1. 청계천에 반려견과 산책하신 적 있으신가요?

- 네
- 아니요

다음

← → ↺ ⋮

||| ○ <

N 품

청계천 반려견 출입 시범사업 시민 설문

5/6 변 필수

* 7. 반려견 동물등록을 하셨나요?

- 예
- 아니요

* 8. 반려견 인식표(팬던트)는 착용하셨나요?

- 예
- 아니요

9. 반려견 산책 시 불편사항 및 개선사항 등을 기재해주시요.

답변을 입력해주세요.

* 10. 향후 반려견 출입 구간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무엇 입니까?



||| ○ <

* 11. 상기 10번에 대한 응답사유를 자유롭게 기재해주시요.

답변을 입력해주세요.

12. 기타 제안하실 점이나 의견 있으신 경우 남겨주세요.

답변을 입력해주세요.

2. 개인 출입

N 품

1/6

청계천 반려견 출입 시범사업 시민 설문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설공단 청계천관리처입니다.

청계천 반려견 동반 출입 시범사업관련하여 시민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설문의 참여하신 분들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소정의 경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시민여러분들의 애정 어린 말씀 부탁드립니다. 청계천이 시민여러분의 쉼터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09.06. 오후 03:45 ~
2024.12.31. 오후 08:00

* 답변 필수

* 1. 청계천에 반려견과 산책하신 적 있으신가요?

- 네
- 아니요

다음



* 2. 청계천 반려견 동반으로 인해 불편하십니까?

- 네
- 아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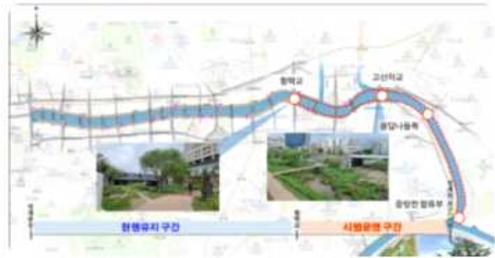
이전

다음

* 3. 불편하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통행불편(위협, 접근, 두려움 등)
- 배변으로 인한 오염(대소변, 무단투기 등)
- 개 짖는 소리로 인한 소음
- 기타

* 4. 향후 반려견 출입 구간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 전 구간 출입허용 (모전교~중랑천 합류부)
- 현 시범운영 구간 유지 (황학교~중랑천 합류부)
- 전 구간 출입금지
- 기타

* 5. 상기 4번에 대한 응답사유를 자유롭게 기재해주세요.

답변을 입력해주세요.

6. 기타 제안하실 점이나 의견 있으신 경우 남겨주세요.

답변을 입력해주세요.

이전

다음